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선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사업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사업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한쪽이 유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 장단점이 있으며, 양쪽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에,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2.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개인기업’은 사업주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설립된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든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규모의 자본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된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한 후 배당이라

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하는 것이다.

3.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져야 하므로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기업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당할 수도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유한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외신인도의 면에서 개인기업은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낫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세율과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법인세율은 10%, 22%(과세표준 2억원 초과시)로 되어 있어 세율측면에서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에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인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5. '개인기업' 이나 '법인기업' 이나 – 사업 형태의 결정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설립하려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형태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가서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앞서 본대로 세율이 개인기업은 최고 35% 세율이, 법인기업은 최고 22%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세율만 고려한다면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또한 세무조사에 있어 요즘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

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조사기관이 세무서냐, 지방청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그 이외에는 세무서에서 조사한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 정도되는 기업이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법인은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 등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소득세도 함께 추징하게 되므로 허위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앞서본 각각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사업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도 세율 한가지만을 생각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상황들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5월 한달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연간 소득의 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세대원의 주택 및 예금 등 자산합계가 1억원 미만(직전년도 6월 1일기준)이어야 하며,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직전년도 6월 1일) 소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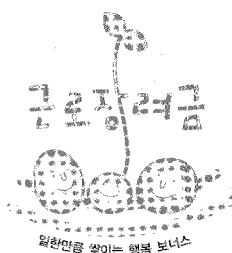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연간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의 15%, 800만원에서 1,200만원 미만은 120만원, 1,200만원에서 1,700만원 미만에게는 (1,700만원-근로소득)의 24%가 차등 지급된다.

전년도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나의 장려금 알아보기’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출처 : 국세청